
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621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6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윤종필 · 金成泰

김승희 · 홍문종 · 조훈현

김규환 · 박대출 · 김상훈

박명재 · 이은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·행정자치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·위촉하도록 하고 있음.

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정책사안이지만 현재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·운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개최 및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 이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·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환경부장관으로”를 “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”로, “차관급 공무원과”를 “공무원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빛공해방지위원회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<u>환경부장관으로</u> 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빛공해방지위원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환경부장관이 지명</u> <u>하는 소속공무원으로-----</u> ----- ----- <u>공무원과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· ⑤ (생략)</p>	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